

환경권과 환경법의 이해¹⁾

I. 환경권(環境權)

1. 환경권의 의의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환경권의 인정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법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법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세계 각국은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면서 환경권을 인간 생존을 위한 현대형 인권(제3세대 인권)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헌법 제33조는 이러한 환경권에 관한 사상을 수용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1987년에 전면개정된 현행 헌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각종 개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²⁾

환경권은 헌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비롯하여 생명권,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보건권과 재산권 등이 실효성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라는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가진다.

통상 환경권이라 함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환경권이 실정법상으로 구체화된 일조건, 조망권 등은 개별환경권이라 할 수 있다.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양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판례는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즉,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³⁾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⁴⁾

1) 본 특강자료는 박균성·함태성, 환경법(제7판), 박영사, 2015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 1149 결정<공사착공금지가처분>—도룡농사건.

3)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정부조치계획취소등>—새만금사건.

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사금지가처분>—봉은사사건.

한편,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현재 판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 2008.7.31.]⁵⁾ >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
2.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심사기준과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심사기준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2.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

5)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6.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8.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제216조라고 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4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다른 4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의하면, 확성장치를 통해 유발되는 소음은 소음의 크기, 소음발생의 시간대 및 그 지속시간, 소음발생 장소에 따라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 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소음 피해는 공직선거 운동에서 확성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으로부터의 피해를 사소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거지역에서의 출력수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장소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도록 정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거주 지역에서 저녁시간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과소보호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이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확장장치로 인한 소음을 예방하는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기본권보호의무의 인정 여부를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비교형량하에서 판단할 때, 확장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 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장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확장장치에 의한 소음허용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다.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를 가져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공직선거시 유발되는 선거소음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환경권의 사권성(私權性) 인정 여부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환경침해사건에서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이 사인 간에 주장될 수 있는 사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환경권의 사권성이 인정되면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

판례는 헌법상 환경권 규정이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환경권의 사권성을 부정하고 있다.⁶⁾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⁷⁾

판례는 현재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민법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인정하고 있다. 즉, 수인한도 초과를 조건으로 삼아 민법상의 소유권 등을 근거로 공사의 중지 등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⁸⁾ 최근 소유권과 함께 환경권을 공사중지 및 금지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다.⁹⁾

하급심 판례 중에는 환경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존재하고,¹⁰⁾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을 환경이익의 피보전권리

6)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청담공원사건.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사금지가처분> —봉은사사건.

8) 대법원 1995. 9. 15. 95다23378 판결<공사중지가처분이의> —부산대사건;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사금지가처분> —봉은사사건.

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손해배상(기)> —음성태극광산사건.

10)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

의 근거로 삼은 판례도 있다.¹¹⁾

4. 환경권의 절차법적 보장

환경권을 직접 근거로 하여 환경침해를 예방하거나 사후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현재의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환경권에 직접 근거하여 환경침해를 예방하거나 사후구제를 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종래의 실체법적인 접근만으로는 도저히 심각한 환경오염피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비록 인격권이라는 중간 관념을 끌어오든, 환경권이라는 용어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환경권이 지향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원이용권, 조망권, 경관권 등과 같은 개별환경권의 정립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에 있어서 실체법적인 접근과 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실체법적인 접근과 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이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의 해석, 입증의 문제, 단체소송의 도입문제 등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하는 절차법(소송법)적인 접근과 해결방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한 입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바, 예컨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의 실질적인 보장, 충실한 평가서 작성 및 평가서 협의과정의 내실화 등의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여 국민의 환경상의 권리를 좀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5. 개별환경권

(1) 일조권

일조이익은 권리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일정한 요건 하에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일조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¹²⁾

일조권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¹³⁾

일조이익은 다른 토지의 이용과 조절되어야 하므로 일조방해는 수인할 한도를 넘은 경우에 한하여 일조권 침해가 된다. 판례도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

합23326 판결 등.

11)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부산대사건 원심판결)

12)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13)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¹⁴⁾ 그리고 건물신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¹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고등법원판결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다.¹⁶⁾

그러나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위와 같은 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¹⁷⁾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¹⁸⁾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1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건물이 들어선 곳의 지역성과 다른 기존의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6)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1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손해배상> —화곡동 다가구주택신축사건.

(2) 조망권

조망은 조망주체, 조망대상 및 가시권 확보로 이루어진다. 조망이라는 개념은 경관이라는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망은 조망주체가 조망의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를 말하며 경관은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관은 통상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다.

조망이익이라 함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익, 달리 말하면 열린 공간(Open Space)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조망이익을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익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논의되는 조망이익은 주로 후자에 속한다.

조망이익을 논함에 있어서는 열린 공간을 향유할 이익으로서의 조망이익과 아름다운 경관을 향유할 이익으로서의 조망이익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열린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인 조망이익¹⁹⁾은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에 기초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권리)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고밀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도시에서 조망이익은 타인의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조망권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법은 보장되어야 할 조망의 범위에 관하여 “인간의 시야는 60°의 원추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시야의 범위는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로 30° 및 60°가 한계인데, 시야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및 위쪽으로 27°의 범위 내에서 마주보는 건물 밖의 외부공간의 조망이 확보되어야 폐쇄감 혹은 압박감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며, 마주보는 건물에서 조망, 압박감과 관련하여 수직시야의 범위는 외부공간을 고려할 때 특히 위쪽(양각)이 고려대상이 된다”라고 보았다.²⁰⁾

최근 논의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이익(경관이익)은 원칙상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경관이익을 일정한 경우에 재산권 또는 영업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특별한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 자는 재산권에 근거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고, 특별한 경관을 고려하여 호텔 등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권에 근거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로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²¹⁾

18)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관하여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19) 좁게는 ‘천공조망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20)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2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고척동 아파트 재건축사건). 동지 판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덕소 현대아파트사건). 열린 공간을 향유할 이익을 조망이익으로 인정하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²²⁾

II.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예방의 원칙

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오늘날 예방의 원칙은 실질적·내용적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은 환경정책수단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과거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수단은 지시 및 통제 등의 직접적 규제와 개별 매체위주의 사후적 환경정책수단이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환경영향평가,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들이 현대 환경정책수단의 중심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저지하고 자원의 적정한 관리 및 쾌적한 환경의 유지·조성을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예방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의 상실)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들 소유의 현대아파트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그 부지는 원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보다 약 8m 정도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한강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고층의 현대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이 조망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한다.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결국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현대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한편, 서울중앙지법 2007. 8. 20. 고지 2007카합1546 결정(혹석동 오륜빌라사건)에서는 일조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조망이 침해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금지를 명하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있어서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조망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오륜빌라 소유자 등이 제기한 조망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2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한편, 사전배려(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예방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전배려의 원칙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달리 말하면 위험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전배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것인 반면에 예방의 원칙에서의 예방은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것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의미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조치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규제입법의 방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사전배려원칙은 우선 환경분야에 적용되었다.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날 사전배려원칙은 보건 및 식품안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규제는 환경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보호가 특히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광우병에 대한 규제, 휴대전화의 전자기파에 대한 규제, 살충제에 대한 규제도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들어지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은 이들 분야 외에도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²³⁾

사전배려원칙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주장된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규제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 책임이 시장 및 법원에 맡겨져 있는 미국에서는 사전배려원칙에 대하여 소극적이지만,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다. 사전배려원칙은 유럽이 미국의 개발론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하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²⁴⁾

2. 원인자 책임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해 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주로 ‘환경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의 ‘실질적 책임 귀속의 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일반적 귀책의 측면에서는 일반경찰법상의 책임원칙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비용부담의 측면에서는 1972년 OECD의 지침에서 제시한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과 유사한 논리구조를 지닌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원인자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원료가 제조자에 의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제품이 판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이어 소비자가 이용한 제품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 과연 오염원인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폐기물을 발생시킨 소비자가 오염원인자라고 볼 수 있지만, 제품은 최종적으로는 폐기물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제조자나 판매자를 오염원인자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오염원인자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자인 경우(행위책임)도 있고, 환경에 대한

23)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판단에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에 있어서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예컨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및 지금까지의 통설적 견해이다.

24)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럽연합은 사전배려의 원칙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해를 야기하는 물건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자인 경우(상태책임)도 있다.

오염원인자의 확정문제는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오염원인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상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처리의 조치명령의 대상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의 정화책임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오염원인자라고 해서 항상 발생된 환경오염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환경법에서는 환경보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오염의 제거의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지우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오염원인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환경손실을 예측할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 등을 적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란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는 그 개선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용자부담의 원칙이라 함은 보전된 환경을 이용하는 자는 그 자연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수익자부담의 예로는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분담시키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들 수 있고, 이용자부담의 예로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들 수 있다.

3. 협동의 원칙

협동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협력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업자가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사업자 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국가행정작용분야 중에서 법의 집행결함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법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법규들은 그것이 제정되어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준수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환경행정분야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고 국민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협력이 없이는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세대간의 형평성의 보장, 현 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4월 발표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등장한 이래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정립되었고, 그 후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

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중심테마가 되었다. 이후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념은 새로운 국제질서로는 물론 각국의 환경정책 이념으로 정립되었다.²⁵⁾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세계 각국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국내법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정책 및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인식되며 개별 환경법 분야와 거기서 추구되는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남겨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현실적으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환경정책과 국토개발정책의 통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방안의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의 도입, 환경세제로의 세계개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²⁶⁾

이러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은 오늘날 환경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3자의 통합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환경과 경제, 환경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화라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세·자동차세 등의 조세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의 문제까지도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제한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환경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화와 달성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의 환경문제해결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Participation)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내지 지역주민의 수용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처리장의 설치 등과 같은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내지 주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상의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25) 이후 2002년 8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 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는데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는 리우회의에 따른 각종 실행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적 내용들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26) OECD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들 상호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정책을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 즉 가격 메커니즘의 조절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성장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장원리를 환경정책에 적극 이용하는 경제적 수단(예: 쓰레기 종량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개발권 거래제도(TDR) 등)를 활용하거나 에너지 등 주요 생산요소의 가격에 환경오염비용을 반영하는 환경세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환경상 조치에 관한 정보의 공개, 환경오염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협의, 환경오염시설의 감시, 환경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참여 등이 포함된다. 정보의 공개 및 주민의 참여는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 및 행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제조자가 가지는 정보의 공개 및 사업자의 환경관련활동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 경우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UIG)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보가 널리 보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환경정보공개는 일반적 정보공개체도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특히 환경정보에 관하여는 이러한 일반법적 보장 외에도 분야별 입법에 의하여 보다 강화된 정보공개가 보장되고 있다. 한편,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아직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고, 선진국과 달리 환경단체의 참여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III. 환경법의 발전 단계와 분류

1. 환경법의 발전 단계

환경문제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입법의 추세를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위생법적 성격에서 공해법 단계를 거쳐 환경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에 따른 단계별 환경법의 특성과 입법형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단계별	법적 성격	특 성	대처 방안	입법 형식	기본법 형식	소속 국가
1단계	위생법	- 보건위생의 한 분야	공중위생 보호적	단일법	없음	개발초기단계국가
2단계	공해법	- 시민법적 성격 - 공해에 대한 규제와 피해보상 - 인간중심	국부적 소극적 미시적	단일법 내지 절충형	법중에 혼재	개발도상국
3단계	환경법	- 사회법적 성격 - 환경권의 인정(환경을 자유재에서 공공재로 인식전환),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 조정 및 피해보상, 환경규제 - 환경중심	종합적 적극적 거시적	복수 개별법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추세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

2. 환경법의 분류

(1) 환경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최고 상위규범이다. 이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규정이 환경헌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히 환경권,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환경관련 국가조직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환경관련 법령의 기본원칙을 이룬다.

헌법에 환경에 관한 내용을 기본권편에 둘 것인가, 국가목표규정으로 둘 것인가는 헌법제정권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지만, 독일의 경우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국가의 목표규정으로 하고 있고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우리 나라는 기본권 목록에 환경권(헌법 제35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환경행정법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규율의 가장 주된 부분은 환경행정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은 주로 공적인 규제나 조성행정 등의 공법적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환경행정법은 환경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고, 수많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련법령은 대부분 환경행정법이다.

(3) 환경형법

공권력의 주체가 환경법규에 위반한 환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행정법으로서의 환경범죄가 대부분이겠으나, 형법전 가운데 환경범죄를 입법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를 보면 환경범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규율되고 있다. 첫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분야별 개별환경법들이 벌칙에 관한 장에서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과실범처벌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형법상 음용수사용방해죄(제192조)·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제193조)·음용수 혼독치사상죄(제194조) 등의 음용수에 관한 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2조의 2), 과실치사상죄(제266조, 제267조) 등 환경상의 법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형법규정들이 있다.

(4) 환경사법

환경사법이란 환경과 관련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영역을 말한다. 이는 주로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중지청구(방해제거청구나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현재의 침해행위의 중단이나 장래의 침해행위의 예방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물건적 청구권조항이나 상린관계규정이 환경사법에 해당한다. 후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는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환경침해행위의 특성이 고려된다. 그리고 무과실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5) 환경소송법

환경소송법이란 환경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분쟁의 분야 및 성격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환경분쟁

조정법이 있다.

(6) 국제환경법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국경을 넘는 오염의 문제 등은 이제 국가간의 합리적인 논의와 협약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관련 국제조약을 비롯한 국제관습법, 국제법일반원칙을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며, 이 밖에 수많은 환경협약 및 조약이 있다.

IV. 우리나라 환경법령의 체계

[환경정책기본법] 제 3 조 제 1 호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조 제 2 호는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을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 3 호는 생활환경을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 자체를 정의내리지 않고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정의하고 있다.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환경법상의 환경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 등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은 환경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쾌적한 도시공간 등 도시의 여건도 실질적으로는 환경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지만 환경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관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Pollution)에 대하여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 정의하고 있다(제 3 조 제 4 호).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환경 분야의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과 개별 환경관련 법령들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은 환경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환경분야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외의 개별 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오염매체별로 제정되어 있다. 중요한 환경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이 있다.

그리고 국토, 하천, 산림 관련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의 이용·보전 등의 규정들도 환경법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오늘날 중요한 환경법의 법원이 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수단들이 점차 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서도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환경보전이나 관리가 지역주민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

